

제 3 4 1 회 임 시 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23. 08. 30.(수)

경상북도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번호	315
제안일자	2023. 08. 17.
회부일자	2023. 08. 22.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전 문 위 원 실

# 경상북도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제 안 자 : 박선하 의원 외 14명

2. 제안이유

- 장애인의 드론 교육훈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자립지원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을 위한 사업 지원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4. 관련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법」

## 5. 관련부서 협의

- 법제심사 : 심사완료(입법정책담당관)
-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법무혁신담당관)
-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감사관)
- 해당부서 의견 : 없음(장애인복지과)
- 예산관련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출(장애인복지과)

## 6. 입법예고 결과

- 예고방법 :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 공고
- 예고기간 : 2023. 08. 22. ~ 08. 28.(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105호)
- 의견제출 : 없음

## 7. 검토의견

### 제안이유

-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생활 안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의 드론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참고로, 드론은 무인비행장치, 무인비행기 등으로 원격, 자동, 자율로 항행하는 비행체입니다. 최근 산업기술의 발달과 컴퓨터 산업의 발달을 통하여 새로운 산업으로 다양한 분야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종자수색, 무인택배, 항공사진촬영, 영농분야, 산불예방활동, 군사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동의 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 주요내용

- 본 제정조례안은 본칙 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안 제1조는 드론 교육훈련 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법령에 근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례의 목적의 목적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과 “드론” 등 용어를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 제3조는 장애인의 드론 교육훈련 지원에 필요한 시책수립과 시행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안 제4조 드론 교육훈련 지원대상을 경북도 내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명시한 것으로, 장애인 드론교육훈련의 책임을 도지사로 명시하고,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입니다.
- 안 제5조는 드론 장비활용 교육훈련과 전문인력 양성 및 직무역량 강화 훈련, 일자리 창출사업 등을 사업으로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한 것이며, 교육훈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드론 전문교육 훈련기관이

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 제7조는 안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론 관련 전문교육훈련기관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며,
- 안 제8조는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및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시·군, 관계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 종합의견

- 「장애인복지법」 제21조1)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2)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고 시행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3)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를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경북도내에는 47개소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운영되고 있

- 
- 1)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 직종 및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 3)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며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으나, 박스생산, 복사용지, 종이컵 제조 등 단순업무에 머물러 있는 수준에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새로운 성장 분야로 각광받고 있는 드론 교육을 통한 장애인이 새로운 산업에 참여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경상북도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드론 교육훈련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자립기반 조성을 조례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 다만, 조례 시행과정에서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 등에 면밀하고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사업효과에 대한 분석 등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